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험 광공업품의 표준 정합성 및 국제표준화 강화 등〉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1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고위험 광공업품의 표준 정합성 및 국제표준화 강화	3
2. KS 인증제도의 합리화 및 인증체계 다양화	8
3.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제재체계 강화	13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6.
3. 회부연월일 : 2026.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기심사의 획일적 운영,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 확산으로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확인·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사고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KS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험·심사 비용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표준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이를 통해 KS 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위험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고위험 광공업품의 표준 정합성 및 국제표준화 강화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6항 신설),

리튬이온 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5조의2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기준 또는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뿐 아니라 상충 방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수립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현황을 매년 분석·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략) <u><신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출연금) (생략)	제5조의3(출연금)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u>부합화</u>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부합화</u> 및 <u>상충 방지</u> -----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u>강구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신설></u>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 ----- -----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 관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현행법¹⁾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및 국제표준화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기준 또는 표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준을 정하려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등과의 표준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등 고위험 광공업품과 관련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위험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의 신속한 제·개정이나 KS와 KC 안전기준²⁾ 간 정합성 확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표준 대응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의 신속한 제·개정을 촉진하고, 리튬이온배터리 등 고위험 제품과 관련하여 KS와 KC 안전기준 등 관계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관계 행정기관이 기준 또는 표준을 정하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상충

2) KS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KC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의미함.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 지원 및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표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표준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의 제·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KS와 KC 기준 간 충돌 가능성을 줄여 안전관리체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대응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 선점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및 KS와 KC 기준 간 정합성 확보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대상 범위 및 협의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고위험 광공업품의 경우 산업표준과 개별 안전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준 간 내용 상충이나 시험·인증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체계 및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KS 인증제도의 합리화 및 인증체계 다양화

개정안은 KS 제품인증의 대상을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 외에 개발·설계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는 한편(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7조),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정기심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표준 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을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정기심사 주기 연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u>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u>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 ----- -----제 <u>조하거나 개발·설계하는 자는</u> ----- ----- -----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증심사) ① -----

-----인증심사의 유형
에 따라 그 제품-----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증을 신청한
자-----

-----.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인증을 신청한 자-----

-----.

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
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
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
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

⑥ 인증심사의 유형·방법-----

-----.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

----.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
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등

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업등을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

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

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u>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u>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④ <u>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u>
--	--

현행법³⁾은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KS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KS 인증제도는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조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개발·설계 중심 기업이나 첨단산업 기업의 참여에 한계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획일적인 정기심사 운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에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KS 제품인증 대상을 기존의 제조하는 자 외에 개발·설계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정기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설계 중심 기업 등도 KS 인증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KS 활용 확대와 다양한 사업 형태를 반영한 인증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인증심사 중복 최소화 및 정기심사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완화와 인증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조자가 아닌 개발·설계 주체에 대해서도 인증을 허용할 경우 실제 제조와 품질관리가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단계의 관리체계 및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제재체계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5조제3항·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확인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확인조사에 대하여 조사계획 통지, 증표 제시 및 출입문서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20조),

인증심사원의 업무 범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안 제18조),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원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확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불법 제품·서비스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1조의2 신설),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u>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u> 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 ----- -----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u>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u>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u> 업무	3의2. ----- ----- <u>시판품조사·현장조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u>

를 수행한 때 4. 5. (생 략) ④ (생 략)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u>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4.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사무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u>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 ----- ----- ----- ----- ----- ----- ----- ⑥ -----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
--	--

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
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
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
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판매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
당 불법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
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생략)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증받은자-----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1. -----시판품조사·

<u>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u>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생략)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u>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u>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 4. (생략) ② (생략)	<u>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2.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 -----. 1. -----<u>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먼저, 현행법 제20조4)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 중인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의

4)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41조⁵⁾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제20조제2항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44조⁶⁾는 해당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KS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조사·단속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유통이

5) 「산업표준화법」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6) 「산업표준화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확대됨에 따라 허위 KS 인증표시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불법 제품·서비스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허위 KS 인증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권한과 제재수단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허위의 KS 인증표시에 대한 확인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확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제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허위 KS 인증표시 등 법 위반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응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고 인증심사원이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조사 업무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불법 제품·서비스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확인조사는 허위 KS 인증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기존의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달리 위법행위 적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사권 행사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조사계획 사전통지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긴급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현장 출입 및 서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하위법령 또는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인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 및 사전통지 예외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 범위 및 조치 요청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22조⁷⁾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인증제품 등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런데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KS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직접적인 인증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인증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제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KS 기준에 위반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통 방지와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는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제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제재처분 과정에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입증방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KS 인증,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관련 컨설팅,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기관 등이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 ----- ----- ----- ----- ----- -----, 이 경우 단체표준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

현행법 제25조⁸⁾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및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KS 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KS 인증은 시험·검사, 정기심사, 이전심사 등에 상당한 비용과 행정

8)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절차가 수반되는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인증 취득과 유지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증 관련 전문인력과 시험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산업표준화 참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KS 인증,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관련 컨설팅,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KS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표준화 참여와 KS 인증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제품 우선 고려 규정을 통해 우수 단체표준제품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증 관련 비용 지원 및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재정지원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 범위·대상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인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업종 및 인증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